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6월25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치수과장 이 종 업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,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1998년 9월 25일자 조례 제392호로 제정·운영되어 온 「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하수(下水)와 오수(汚水)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,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「하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.

상위법인 「하수도법」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등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없음.

3. 검토보고

본 조례안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전면개정(2007.9.27)에 따라 기존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중 제24조(과태료의 부과징수) 제4항 규정이 폐지되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1998년 9월 25일자 조례 제392호로 제정·운영되어 온 「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

그 동안 근거법령인 「하수도법」과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원화 되어 있던 하수(下水)와 오수(汚水)의 관리 체계를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, 비효율적인 측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으며,

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조 [별표 8]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, 부과·징수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42조와 같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